

의안번호	2207360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5.1.14.
추계번호	25B0139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3 (난임치료휴가)	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함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(제1항)	의무규정
		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함 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8조의3 (난임치료휴가)	—	• 미대상(제1항) －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,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조항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－ 다만,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2207363호)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
		×	• 미첨부(제2항) －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－ 본문참조

2. 상세 사유

□ 안 제18조의3제2항은 난임치료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521호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기간은 연간 최대 6일(최초 2일 유급)이며¹⁾, 이에 대해 법률 제20519호 「고용보험법」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최대 2일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임²⁾
- 동 개정안은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521호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대한 개정안으로, 동 개정조항은 난임치료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제도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용 절차 및 행태변화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증가량을 산출하여야하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행태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
 - 즉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하나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사용 편의성 제고에 따른 “추가 사용자의 수”와 이들의 “추가 사용기간”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- 개정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736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1) 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“난임치료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2) 제76조(지급 기간 등) 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